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

2008. 8. 18. 제 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4. 3. 5. 전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6. 4. 15. 일부개정
2016. 4. 29. 일부개정
2016. 11. 1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개정 2016. 11. 10)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11. 10)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설 2016. 4. 29)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및 교육) ①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④ 법과정책연구원은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신설 2016. 11. 10)

제 2 장 연구윤리

제1절 투고윤리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① 투고되는 논문 등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⑥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① 투고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저자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29)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2절 편집윤리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제반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심사윤리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판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 11. 10)

제7조(위반사실 고지의무) 심사자는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윤리위원회

제1절 설치와 운영

제9조(설치와 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교내인사 3인(부교수 이상인 자)과 교외인사 4인(부교수 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과정책연구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3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절 위반행위의 조사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예비조사위원 및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절 제 재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3년 이상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소속기관에 통보
6. 관련학회에 통보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과정책연구원을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본 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조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21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및 심의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완료된 후 그 결과는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윤리위원·참고인·기타 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개정) 본 규정은 본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7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1조의2, 제4조 제1항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제목 :

본인은 『법과정책』(『국제법무』)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논문투고자로서 본 규정을 준수하며,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향후 표절·이중게재로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진상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함은 물론, 위반 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투고자 (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